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검용과 관련된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상이한 일제개방밸브 설치위치의 기준을 정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검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5, 2.13.4)

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4의 기준에 따르고"를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로 정정(안 2.4.1.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